



의안번호	제 2013 - 1 호
보 고 연 월 일	2013. 2. 4. (제4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64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II. 향후 일정	16

별첨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최형표,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최형표,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주용완, 조석영, “공청회 · 관계기관 의견 검토”
	수석전문위원,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I. 제64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1. 28.(월) 16:00 ~ 18:1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범현,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조석영, 주용완,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화 회신 결과 검토
- 2013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4. 회의 요지

가.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권고 형량범위

-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특가법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양형기준만을 보아서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이 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

산서 수수 등 유형의 양형기준상에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이 병과 된다는 사정을 부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 식품·보건범죄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가 적용되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행위,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되는 부정의료업자의 의료행위 등의 경우에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유형의 정의] 부분에 명시하고 있음 (2012 양형기준 책자 p. 225 ~ 229 참조)
- 조세범죄의 경우에도 식품·보건범죄의 예에 따라서 양형기준상 [유형의 정의] 부분에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명시하고, 법정형 부분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표시하기로 함

조세범죄 양형기준상 [유형의 정의] 부분에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명시하고, 법정형 부분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표시

(2) 양형인자

(가)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의 수정

- 자료상의 경우 단속에 대비하여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고 적발이 되면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형인자 중 “장기간에 걸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 또한,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제2, 3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위 양형인자가 자료상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위 인자의 적용이 가능한 영역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중 제1유형에 불과하므로, 위 양형인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제1유형에 한함)”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으로 수정

(나)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유지할지 여부

- 논의 결과, ① 비록 다른 범죄에 비하여 적용 빈도가 낮더라도 다른 양형기준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세법이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고의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위 인자를 삭제하면 대체가능한 다른 인자가 없다는 점, ④ 행위불법의 정도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선불리 양형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안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의 수정

- 위 인자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적용을 막기 위하여 그 표현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므로 위 인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상향할지 여부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이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의견	논거
일반가중인자로 유지 (다수 의견)	○ 거래처에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위 범죄에서 흔히 있는 경우인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특별가중이 되는 결과 초래 ○ “계획적·조직적 범행” 등 다른 특별가중인자와 비교하더라도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할 만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음
특별가중인자로 변경 (주용완, 조석영)	○ 당초 양형인자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제한문구를 부기하였으므로 위 양형인자의 남용 또는 부적절한 적용 가능성이 상당 부분 회피될 수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의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데, 동일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양측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에는 특별감경요소로, 다른 일방에는 일반가중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일반참작사유’로 변경할지 여부

- 양형기준상에는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일반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이를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주요참작사유에서 일반참작사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집행유예 기준 중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를 ‘주요참작사유’에서 ‘일반참작사유’로 수정

(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의 수정 여부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기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을 조세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위 인자를 수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전해가 나뉨

의견	논거
통고처분을 삭제하자는 의견 (다수 의견)	○ 통고처분은 단순한 행정청의 처분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실무상 통고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타협적 사고에 의하여 다투지 않고 통고처분 받은 조세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 통고처분은 벌금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에 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징역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관서는 즉시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 비하여 그 위반의 정도

	가 약한 경우가 많음 ○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형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와 동일시한다면 향후 통고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현행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이주원, 주용완, 조석영)	○ 교통범죄 등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비하여, 조세범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없음 ○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은 사실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의 동종 전과와 비슷하게 참작하는 것이 상당함 ○ 통고처분을 하는 사안의 경우 대개 조세범칙조사가 초기에 종결되어 포탈액 등이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그 사안이 수사까지 이르렀다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밝혀질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나. 공갈범죄

(1) 권고 형량범위

- 공갈범죄는 이득액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의 정도도 함께 감안해야 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권고 형량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득액이 동일한 경우 공갈범죄의 죄질이 사기범죄보다 나쁘다고 하는 점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감경영역에서만 사기범죄와 동일한 권고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은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됨

유형	구 분	수정 전			수정 후		
		감경	기본	가중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4월 - 1년2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년 - 7년	10월 - 3년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

자로 추가할지 여부

- 사기범죄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갈범죄에 있어서도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및 현행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뉘

의견	논거
특별가중인자 추가 반대,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 서 삭제 (다수 의견)	○ 사기범죄나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에게도 약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의 공갈에 대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준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선택하나, 그 정도를 넘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려움

	○ 사례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만약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강도죄,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것임 ○ 공갈범죄에 있어서 현금을 갈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동산이나 회사 경영권 등의 경우에 금액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사안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기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임 ○ 공갈범죄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해규모는 이득액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는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다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유형분류와 맞지 아니함 ○ 소수의견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또는 신체상의 중대한 침해는 공갈과 법률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집행유예기준은 현행안 유지 (주용완, 조석영)	○ 공갈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사기범죄와 같이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 있음. 예컨대 피해자가 갈취를 당한 후 이를 비판하여 자살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공갈범죄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권을 뺏거나 전 재산을 갈취하는 사례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사기범죄 있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
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

-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뉨

의견	논거
일반가중인자로 변경 (다수 의견)	○ 공갈범죄는 사기범죄에 비하여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임. 다만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이를 은닉하는 경우는 양형에 있어서 차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정도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면 충분함 ○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금전을 다액으로 갈취하는 사건은 찾기 어렵고, 피해액이 큰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회사 경영권에 관련된 것인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임. 이에 반하여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가해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점에 비추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큼 ○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사기범죄에서는 위 인자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공갈범죄는 강도범죄와 사기범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상당함 ○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을 때는 장정보다는 그 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됨. 예컨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게 되면, 극히 적은 금액을 갈취한 경우에도 그 재산을 차명계좌 등에 넣어

	두었다고 해서 특별가중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일반가중인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특별가중인자로 유지 (주용완, 조석영)	○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피해자로부터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은닉한 경우에 나아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공갈범죄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여 부하직원 명의로 해 두는 경우와 같이 피해규모가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다)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는 일반공갈뿐만 아니라 특수공갈에도 동일하게 특별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상습공갈·누범공갈 및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은 행위요소가 아닌 행위자 요소에 의해 유형이 결정되는 범죄로서 위 범죄들에 관해서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삼기에는 부적절함
- 따라서 ‘특수공갈 유형’에 관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추가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데 의견일 일치됨

‘특수공갈’ 유형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

(라) ‘자수’ 이외에 ‘내부비리 고발’을 행위자 인자의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폭력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자릿세 징수

등 사건에서 내부비리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위자 인자 중 특별감경인자인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로 수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일 일치됨

행위자 인자 중 특별감경인자인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로 수정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삭제 여부

- 양형기준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음
- 폭력범죄는 다양한 폭력형태로 인해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이러한 유형의 특별가중요소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공갈의 경우 폭력범죄와 같은 정도로 구성요건 외적으로 이 요건이 문제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었음
- 폭력범죄와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이 양형인자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가운데 하나로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가운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가운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부분은 삭제

다. 방화범죄

(1) 권고 형량범위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대부분 감경영역의 상한과 가중영역의 하한이 중첩되지 않고 있으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중 제2유형만이 점으로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유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양형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데 의견일 일치됨

유형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감경	기본	가중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4년-9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유형의 정의

- [유형의 정의]에서 “특가법상 산림 방화”의 적용법조가 특가법 제9조, 산림자원법 제71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가법 제9조 제1항은 산림절도, 무단벌채, 무단 형질변경 행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조항 이므로 산림 방화를 특정하기 위하여 적용법조를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유형의 정의] 중 특가법상 산림 방화의 적용법조를 “특가법 제9조, 산림자원법 제71조”에서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로 수정

(3) 양형인자

(가)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인자 정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고, 이에 관한 정의 중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제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예로 들고 있음
- 방화범죄는 많은 경우 피해자(특정한 개인이건 사회나 집단 전체이건)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비롯되고, 또한 행위자가 가진 원한이나 증오감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는 실제 판결례에 나타난 사례가 적지 않고, 위 인자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 많아 위 인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예시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

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다른 범죄(예컨대, 강도범죄, 폭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통상의 방화범죄에서도 위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방화범죄에서는 일반적인 범행동기로 볼 여지도 충분함

- 대부분의 방화범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촉발된 분노, 보복, 증오감 등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특별가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방화범죄가 특별가중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
- 따라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예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특별가중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양형인자 정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삭제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양형인자 정의에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물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할지 여부

- 실무상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서 타 종교시설을 방화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고 보이므로 이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특별가중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양형인자 정의 중에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물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

(4) 집행유예 기준

-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독일 형법에서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연적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형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는 방화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곤란한 사정을 참작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적용의 면이 상이함
- 다만, 양자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를 적용할 수 없도록 양형기준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위 인자 중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함)”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집행유예 기준의 일반참작사유 중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함)”로 수정

라.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적정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65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